##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75

발의연월일: 2021. 6. 29.

발 의 자:구자근・곽상도・권명호

김석기 · 김영식 · 김예지

박성민 · 서병수 · 이 영

이채익 · 조수진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 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 계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 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및 제6항).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ㅇ</u> )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②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u>중견기업</u>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u>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 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
/r
500억원
나
1000억원
<u>&lt;</u>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u>5년</u>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1. · 2. (생략)

⑦ ~ ⑪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